

2016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본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2017. 04. 14

대표이사 민 정 기



# 1. 보상위원회

## 가. 총괄

당사는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상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당사 이사회규정 제 10 조 제 1 항을 그 근거로 하여 2015 년 3 월부터 운영되어왔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 년을 원칙으로 하며, 사외이사인 위원은 연속하여 2 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기만료 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16 년 말 기준, 임기 2 년을 초과 재임한 위원은 없습니다.

또한 보상위원회규정 제 9 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 나. 구성

### (1) 총괄

보상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보상위원회규정 제 3 조 및 제 4 조에 의거 2 인 이상 5 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인 위원을 위원장로 하고 총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6 년 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총 3 인(민정기, 류승헌, 디디에 뚜슈)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 인(류승헌, 디디에 뚜슈)의 위원이 사외이사이고 류승헌 사외이사가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어, 보상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중 류승헌 사외이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IR 관련 분야, 디디에 뚜슈 사외이사는 BNPP AM 에서 리스크 관리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또한 이 두 사외이사는 현재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들로 보수 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이 심도 있게 다루어 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류승헌 사외이사가 선임되기 이전인 2016 년 12 월 이사회 이전까지는 김임근 사외이사와 전영교 사외이사가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디디에 뚜슈 사외이사가 선임되기 이전인 2016 년 2 월 이사회 이전까지는 빈센트 까멜링크 사외이사가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 년 2 월 이사회 이전>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민정기	위원	상임이사	유	(現)신한 BNPP 자산운용 대표이사
전영교	위원장	사외이사	유	(現)신한금융지주 본부장
빈센트 까멜링크	위원	사외이사	유	(前)BNPP I.P. Asia H.K. CEO

※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6년 08월 1일 신설 / 세부 약력은 15~19 페이지 참고

<2016년 2월 3일 이사회 이후 ~ 2016년 12월 15일 이사회 이전>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민정기	위원	상임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유	(現)신한 BNPP 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임근	위원장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유	(現)신한금융지주 본부장
디디에 뚜슈	위원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유	BNPP AM. Market Risk APAC&Emerging Head

※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6년 08월 1일 신설 / 세부 약력은 15~19 페이지 참고

<2016년 12월 15일 이사회 이후>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민정기	위원	상임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유	(現)신한 BNPP 자산운용 대표이사

류승헌	위원장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유	(現)신한금융지주 본부장
디디에 뚜슈	위원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유	BNPP AM. Market Risk APAC&Emerging Head

※ 세부 약력은 15~19 페이지 참고

##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민정기	상임	대표이사	2016.03.30	2017 개최 정기주총
류승헌	사외이사	위원장	2016.12.15	2017.12.31
디디에 뚜슈	사외이사	-	2016.02.03	2017 개최 정기주총
김임근(사임)	사외이사	위원장(전)	2016.03.30	2016.10.25

## 다. 권한과 책임

### (1) 총괄

보상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당사 보상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성과보수체계를 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상위원회는 2016 년 3 월 30 일 개최된 제 21 기 제 1 차 보상위원회에서 다음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015 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단기성과급 지급(안) 확정 의 건
- 2016 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안) 확정 의 건
- 2016 년도 경영진 보수 및 수당 결정 의 건
- BNPP(제휴파트너)와 협의 후 선임한 경영진의 2016 년도 보수 및 수당 결정 의 건
- 2015 년도 연차보상 평가 의 건

경영진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를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보수 및 지급방식은 아래 보수의 세부정보와 같이 의결하였으며,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하는 직원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경영진에 대한 보수 체계 정비 및 적용 후 점진적으로 그 해당자와 보수 체계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는 2016 년 8 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상위원회 규정에 보상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결의 사항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동 규정을 근거로 보상위원회는 추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 일전부터 당사 및 금융투자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거나,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 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계획입니다.

####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상위원회는 2016 년 3 월 30 일 개최된 제 1 회 보상위원회에서 회사의 보상체계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다음의 주요 항목에 대해 운영 현황을 리뷰하고 적정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 보상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 보상제도의 설계 원칙 준수
- 변동보상 제도의 운영 및 성과평가 지표

특히 시행 초기인 보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주요 업무 수행 여부, 보상의 설계 원칙 준수 여부,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변동보상제도 운영, 성과평가 지표 등을 집중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보상위원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는 2016년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개정된 보상위원회규정에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소집방법, 결의방법, 주요현황을 포함하는 의사결정 절차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될 수 있으며,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 보상위원회는 2016년 3월 30일 개최된 제 1회 보상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 임원 등의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등에 비추어 매우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수 지급, 보수체계 재조정 등 보수체계 관련 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 보상위원회는 2016년 3월 30일 개최된 제 1회 보상위원회에서 연차보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8) 보상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당사 보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 결정에 관한 사항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상안의 확정에 관한 사항
- 보상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상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회사의 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대상자의 결정
- 지주회사 보상위원회가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기 사항은 당사 국내외 모든 사업부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2016년 3월 30일에 개최한 제 1차 보상위원회에서 당시 지배구조 모내부규범에서 정한 특정업무 종사자의 범위 및 변동보상 대상자를 경영진운영규정에 따른 경영진으로 하며, 추후 본부장 포함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당사는 보상위원회규정 제 6조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임원을 변동보상의 대상자를 우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범주에 따라 2016년 12월말 기준 임원은 대표이사 사장 1명, 부사장 2명 등 총 3명(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제외)이며,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현재 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3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검토중	-

**라. 보상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 (1) 의사결정 절차

보상위원회는 위원장(현재 류승헌 사외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7 일전에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목적 사항 등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회사내 보상위원회 지원 부서를 통해 각 위원에게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2016 년도 결의사항 중 별도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 (2) 활동내역 개요

당사는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3 번의 보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각 일자별 참석 위원과 결의 안건 그리고 결의 여부는 아래 개최 내역으로 상세 기술하였습니다.

## (3) 회의 개최내역

### (가) 제 1 차 보상위원회

2016 년 3 월 30 일 [안건 통지일 : 2016 년 3 월 28 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민정기	김임근	디디에 뚜슈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나. 제2호 안건 (2015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단기성과급 지급(안) 확정의 건)	-	찬성	찬성	가결
다. 제3호 안건 (2016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안) 확정의 건)	-	찬성	찬성	가결
라. 제4호 안건 (2016년도 경영진 보수 및 수당 결정의 건)	-	찬성	찬성	가결
마. 제5호 안건 (2015년도 연차보상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상위원회규정 제 7 조 제 2 항)

#### (나) 제 2 차 보상위원회

2016 년 6 월 2 일 [안건 통지일 : 2016 년 5 월 26 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민정기	김임근	디디에 뚜슈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제휴파트너인 BNPP와 협이하여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선임한 경영진에 대한 2015년도 단기성과급 지급(안) 확정 의 건)				
나. 제2호 안건 (제휴파트너인 BNPP와 협의하여 선임한 경영진에 대한 2016년도 보수 및 수당 결정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 3 차 보상위원회**

**2016 년 12 월 15 일 [안건 통지일 : 2016 년 11 월 25 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민정기	류승헌	디디에 뚜슈	
1. 위원 성명	민정기	류승헌	디디에 뚜슈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 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나. 제2호 안건 (2016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체계 일부 변경 승인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상위원회규정 제 7 조제 2 항)

**(4) 평가**

보상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9조(이사회내위원회) 제4항에 의거 연1회

이사회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 수준, 이사회내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평가제도 도입 승인을 '16년 12월 제21기 제10차 정기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17년도 1월에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되며, 보상위원회는 동 평가에서 4등급(우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위원회 개최 빈도의 적정성, 위원회 회의시간의 적정성, 위원회 안건의 범위·깊이 적정성, 당사로부터의 적기에 충분한 정보수령 여부 등이 포함되며, 이 평가는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후 당사는 매년 초 전년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 2. 보수체계

### 가. 주요사항

####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당사는 회사 전체 성과 측정시 수익성 지표(영업순이익, 영업이익경비율 등), 외형 지표(시장 지위, 특정 채널 판매액 등), 고객자산운용성과(유형별 운용 수익률 등)를 주요 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경영진의 경우 업적 평가(그룹 KPI 달성도, 회사 KPI 달성도, 담당업무 KPI 달성도, 담당업무 전략과제 등) 및 상급자·동료·하급자 대상 다면평가 등 역량평가 점수를 그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경영진의 경우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로 전항 영업순이익, 영업이익경비율 등 재무성과, 고객자산운용성과 등의 지표를 활용하며, 개인 성과측정 지표로서 해당 경영진의 개별 담당업무 KPI 및 비계량부문의 전략과제 이행률 등을 통해 이를 개인 성과보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당사는 직원 성과급 재원 중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98%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주식으로 4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은 2015년부터 경영진의 변동보상에 주식연계상품으로 운영되는 장기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였고, 4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 이연지급할 계획입니다.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년간의 평균 성과에 의해 최종 지급 수량이 결정되고, 지급 시점의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주가에 따라 지급 금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당사 장기성과급 구조상 지급 이전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목표에 미달할 경우 장기 보상 전체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보상금액이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53 조 등에서 재무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영진 등의 성과보상 규모가 조정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13 조 제 5 항에 따라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보상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보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지급 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상의 일정비율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 개인 성과 달성률에 따라 현금 또는 주식 부여수량이 조정되며, 단기 성과보수의 경우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달성률 구간에 따라 성과급 지급 비율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상의 경우 다음의 사유에 따라 환수 되거나 유보될 수 있습니다.

#### 주요 환수 사유

-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임한 경우
-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의 해임권고 등으로 해임되거나 면직될 경우
- 장기 보상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한 경우
- 장기 보상을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 장기 보상이 압류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나 손해를 초래할 경우
- 금융감독기관의 감봉 또는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주요 유보 사유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 받는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이사회에서 해당 경영진 등에 대해 지급의 유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당사는 2015년부터 경영진의 변동보상에 주식연계상품으로 운영되는 장기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4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 이연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년간의 평균 성과에 의해 최종 지급 수량이 결정되고, 지급 시점의 신한금융지주회사 주가에 따라 지급 금액이 확정됩니다.

###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기본급 및 활동수당 등으로 분류하고,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 등 업무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인센티브는 성과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과보수 비율은 전체 보수액 중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강도, 해당 업무의 투자성, 시장 보상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수(임직원 단기성과급)와 주식보수(임원 장기성과급, 직원 ESOP)로 구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당사는 임원의 경우, 변동 보상을 연간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현금 보상인 연간성과급과 4 년간 회사 장기성과 및 지급시점 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주식 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연간성과급은 회사 성과, 손익규모의 증감, 개인별 업적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 Pool 산정 및 배분을 하며, 장기성과급은 매년 직위별 기본급의 일정 비율의 수량을 부여한 뒤 4 년간 회사 성과 및 주가, 손익규모 증감 등에 따라 그 수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변동 보상을 연간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현금 보상인 연간성과급과 주식 보상인 ESOP 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직원 변동 보상은 회사 KPI 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현금 보상 Pool 의 5%를 ESOP Pool 로 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의 경우 성과보수액 중 연간성과급은 연간 성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재원으로 익년도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장기 성과급은 4 년간의 회사의 장기성과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주식 보상 제도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사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 및 일반 직원의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 그리고 성과공유라는 취지하에서 ESOP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과급 중 일부를 당사 주식으로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2016 년 약 3 억의 주식을 경영진 등을 제외한 전체 정규직 직원에게 배분하였습니다.

#####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경영진 등 이외 직원의 경우 그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회사 손익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상위원회규정 제 8 조에 의거하여 보상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6 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59 조에 의거하여 회사 임직원들은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2016 년 7 월 28 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기존 보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상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위원에 한해 선임될 수 있게 하였고, 기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규정들을 모두 개정하였습니다.

## **2. 보수체계**

###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 (A/B)		
전년도 (2015년)	228	371	0.61	224	1
당해연도 (2016년)	214	310	0.69	225	1

주 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 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는 t-1 기의 금액을 기재한다. 당해가 2016 년인 경우 2015 년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구분		임원	직원
전년도 (2015년)	보수총액	20	208
	성과보수액	6	54
당해연도 (2016년)	보수총액	19	196
	성과보수액	2	39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기본급	변동보상액	
				이연지급대상	
전년도 (2015년)	임원	4	10.2	4.6	3.8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연도 (2016년)	임원	3	7.6	8.6	5.9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15년)	임원	<b>4.6</b>	<b>0.8</b>	<b>3.8</b>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연도 (2016년)	임원	<b>8.6</b>	<b>3.7</b>	<b>4.9</b>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임원	<b>3.8</b>		<b>3.8</b>

(2015 년)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연도	임원	5.9		5.9
(2016 년)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임원	3.8		3.8		
(2015 년)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연도	임원	5.9	1	4.9		
(2016 년)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이연보수액				
			t 기	t-1 기	t-2 기	t-3 기	이전
전년도	임원	3.8	3.8				
(2015 년)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연도 (2016년)	임원	5.9	5.9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주) 해당연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예시 : 2016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16년(t기) 발생분, 205년(t-1) 발생분, 2014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축소액 주 1)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주 4)
		직접적 조정 주 2)	간접적 조정 주 3)	
전년도 (2015년)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당해연도 (2016년)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주 1) 이연 보수액 축소액 :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 2) 직접적 조정 :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 3) 간접적 조정 :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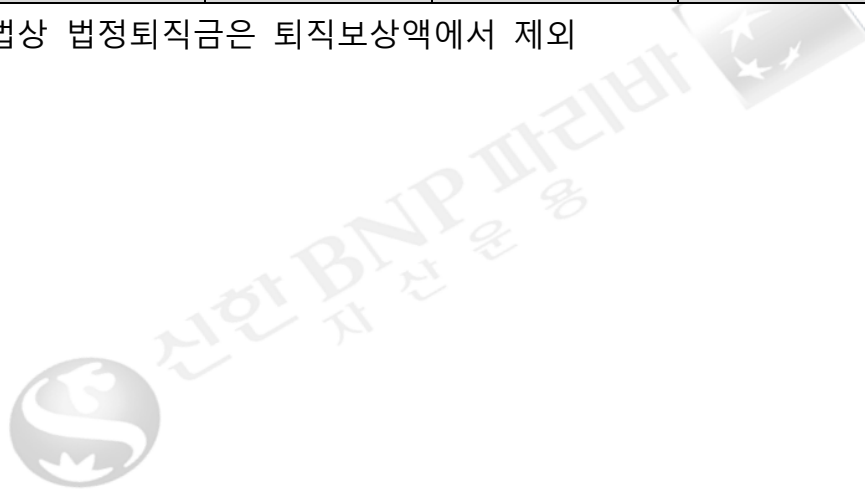
주 4) 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연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지급액
전년도 (2015년)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당해연도 (2016년)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상액에서 제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TEL: 02-767-5777

[www.shbnppam.com](http://www.shbnppam.com)

